

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* []란에 V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/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검사대상 종류 및 종목	구분	☐ 국산농산물(수출용 농산물 포함) ☐ 수입농산물	
	종류	☐ 곡류검사 ☐ 특용작물·서류검사 ☐ 과실·채소류검사(수입농산물 제외)	
	종목	☐ 조곡(포장물), ☐ 조곡(산물), ☐ 정곡 * 곡류검사만 해당	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) 제출서류	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2.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각 1부 3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,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